

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(정부 제출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항공기·우주비행체·기류 또는 소재류를 사용한 자에 대한 제재를 형벌(500만원 이하의 벌금)에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며, 양벌규정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함(안 제21조 및 제22조).

II. 검토의견

- 개정안에 대하여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.

(전문위원 박 혜 진)